

구 고 시

◆ 성북구고시 제2026-120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966-5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성 북 구 청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-	공공공지	성북구 정릉동 966-55번지 일원	231	-	231	' 13.04.25 (성북구고시 제2013-45호)	
변경	-	공공공지	성북구 정릉동 966-55번지 일원	231	감) 83	148		

나.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공공지	-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- 면적 · 기정: 231㎡ → 변경 : 148㎡ 감) 83㎡	사업 실효성 저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일부에 대하여 해제하고자 함.

다. 지형도면의 작성

○ 성북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.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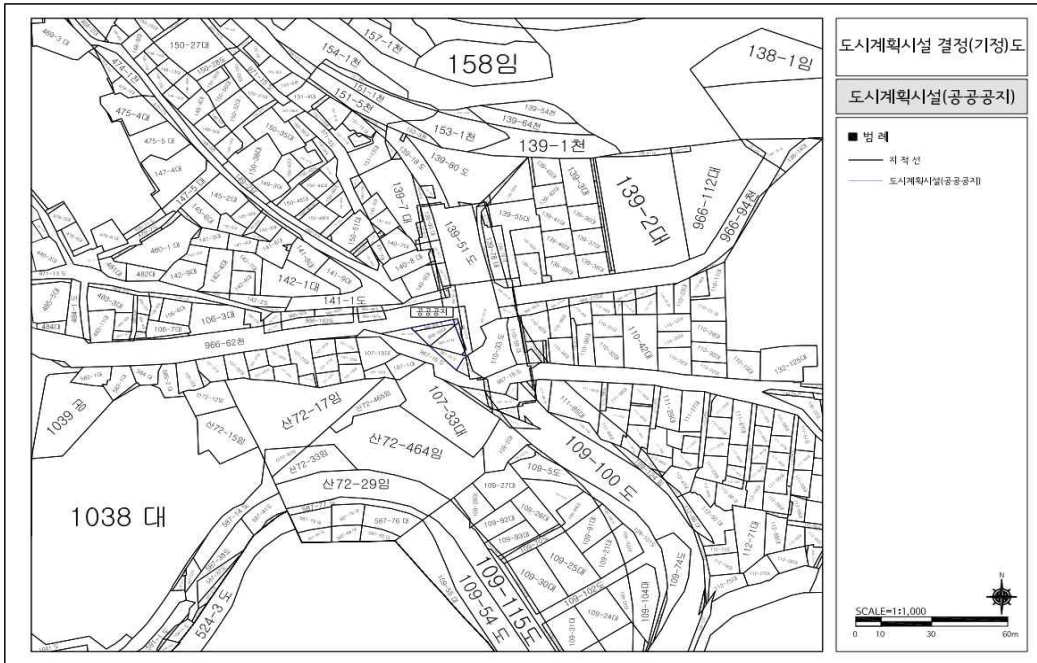
라. 관련서류

○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과(☎02-2241-276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○ 기정



○ 변경

